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35호

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(개발제한구역 해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단절토지 10개소 및 경계선 관통대지 8필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(개발제한구역 해제)을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3일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도시관리계획 변경(개발제한구역 해제)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 후	
변경	개발 제한구역	서울시 단절토지 10개소, 경계선 관통대지 8필지	149,597,339	감)15,982	149,581,357	-

※ 기 정 :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변경(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) 결정(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827호, 2017.12.14.)

○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서

구 분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소규모 단절토지	중랑구 신내동 278-92번지 일대 외 9개소	15,677㎡	-
경계선 관통대지	종로구 부암동 95-1번지 외 7필지	305㎡	-

나. 결정 취지
- 『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』 제2조에 규정에 의한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(개발제한구역 해제)하고자 함.

다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
라. 열람장소 :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(☎ 2133-8331) 및 관계구청(종로구, 중랑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강서구, 서초구, 강남구) 도시계획 담당부서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